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20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임호선·박지원·정준호

김동아 · 채현일 · 고민정

이학영 · 김종민 · 오세희

이재정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면 아 니 되는 화학물질
-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생 략)	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		
	하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u> <신 설></u>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		
	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		
	한 허용기준		
<u>3.·4.</u> (생 략)	<u>5.·6.</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